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980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9800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30 선고 2020가단541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이은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예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남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30. 선고 2020가단5419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9. 11. 22. 접수 제50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64,044,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의 'D'를 'H'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E과 함께 'H'(이하 '이 사건 과일가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과일값을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E의 과일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E과 연대하여 과일대금 변제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64,044,321원(= 제1의 가항 57,531,500원 + 제1의 라항 13,423,500원 - 제1의 마항 배당액 6,910,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E의 과일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과일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E은 2008. 7. 1. 이 사건 과일가게를 개업하였다가 2012. 12. 18. 폐업하였고, 피고 C가 같은 날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과일가게를 계속 운영중이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기에 앞서, 2011. 1. 5. E으로부터 '2011. 12.까지 물건 값 약 4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과일가게 자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i) 물건 값 부채 24,000,000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7호증)를 받았다.

③ 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 B로부터 각서 등 어떠한 서류의 작성도 요구하지 않았는바, 아무런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거액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피고 B가 비록 E이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가 E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E이 아닌 피고 B가 '채무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법률 문외한인 피고 B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⑥ 피고 B는 평소 1주일에 2회 정도 오후에 이 사건 과일가게에 나와 과일 판매 및 점포 정리를 하고, 명절 대목에는 하루 종일 나와 과일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가정형편과 필요에 따라 피고 B가 당시 남편 E의 가게 일을 도와주는데 그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 피고 B가 E과 이 사건 과일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부 일방이 자신의 이름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다른 일방이 돕는 정도를 가리켜 민법 제832조가 정한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000 대 251㎡
2. 동소 000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층 91.41㎡ 농가주택
3. 동소 000 대 159㎡
4. 동소 000 대 172㎡

-이상-